

울산광역시 중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

(김도운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9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8. 25.

발의자 : 김도운, 문기호, 김태욱,
이명녀, 박경흠, 문희성,
정재환, 홍영진, 안영호,
강혜순

1. 제정이유

「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」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,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
나. 보조금지원 및 공유시설 사용(안 제3조~제4조)

다. 포상(안 제6조)

3. 근거법규: 「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」 제2조, 제3조, 제4조

4. 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가. 조례안 예고: 2022. 9. 7.~9. 19.(12일간)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울산광역시 중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」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“바르게살기운동조직”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울산광역시 중구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.

제3조(보조금의 지원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「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·발전을 위한 사업
2.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
3.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
4.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

제4조(공유시설의 사용)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- ②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4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 할 수 있다.

제5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, 교부, 정산 등에 필요한 사

4 (제250회-행정자치위제1차부록)

항은 「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6조(포상)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「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근거법규

□ 「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바르게살기운동조직”이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.

제3조(출연금의 지급 등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(出捐金)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개인, 법인 또는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와 그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조(국유시설·공유시설의 사용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·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울산광역시 중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4호
 -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미첨부 사유

- 바르게살기운동 울산광역시 중구협의회에 대한 예산지원은 해당 단체의 신청을 전제로 「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으로, 보조사업의 내용 및 규모에 따라 필요 예산을 달리함
- 이는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생략함

3. 작성자

- 소 속 : 자치행정과
- 직 급 : 지방행정주사보
- 이 름 : 김재민
- 연락처 : 290-3253